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6차 국방위원회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대체복무요원 가입 금지 정치단체 추가>
▣ 정부제출(의안번호 제2203663호)

2024. 11.

국 방 위 원 회

전문위원 류승우

목 차

Ⅰ. 제안경위 ····· 1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····· 1

Ⅲ. 검토의견 ····· 2

Ⅰ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정부제출

2. 제출연월일 : 2024. 9. 4.

3. 회부연월일 : 2024. 9. 5.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, 창당준비위원회, 후원회,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제5호).

Ⅲ. 검토의견

□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종류에 현행 정당 외에 정당의 조직, 창당준비위원회, 후원회, 선거운동기구,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제5호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의2(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) ① 대체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.	제24조의2(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) ① 대체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(이하 “정치단체”라 한다)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. 1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 및 당헌·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. 「정당법」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.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후원회 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.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, 그 선거의 당선인·후보자·예비후보자 등

현 행	개 정 안
	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
② 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②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	5. 다른 사람---- 정치단체----------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□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"그 밖의 정치단체"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[1] (2020. 4. 23. 선고)한 취지에 따라,

2023년 제21대국회에서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(2024.2.1.시행 법률제19789호)하여 대체복무요원이 "그 밖의 정치단체" 가입 시 연장 복무 및 처벌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, 정당 가입 및 정치 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제24조의2를 신설하였음.

1) 헌법재판소 2020. 4. 23. 선고, 2018헌마551: '그 밖의 정치단체'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헌법 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됨.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'정치단체'와 '비정치단체'를 구별할 기준을 도출할 수 없음(명확성의 원칙 위배)

□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가입이 금지되는 정치단체로 정당에 더하여, 정당의 조직, 창당준비위원회, 후원회, 선거운동기구,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[2]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
□ 다만, 동 개정안을 통하여 가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단체만으로는 시민단체 등 정치적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있는 단체 가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낮을 수 있으며, 대체복무요원이 직무와 연관되지 않는 선에서 특정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[3]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□ 최근 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·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개정안이 국방위원회 소위원회(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24.9.23.)에서 논의된 바,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.

---

2)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(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) ① 「병역법」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(이하 "대체복무요원"이라 한다)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(이하 "대체복무기관"이라 한다)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(이하 "대체업무"라 한다)에 복무하여야 한다.

3) 헌법재판소 판례(헌법재판소 1998. 5. 28. 96헌가) :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,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'방법'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'여부'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.

- 해외 사례에서도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사례가 흔하지 않음. 금지되는 정치단체의 유형을 5개로 특정하는 것은 더 큰 피해가 예상되어 신중한 심사가 필요함.

- 동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·내용을 담은 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안 통과 후 심사가 바람직함.

□ 한편, 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공무원의 가입이 금지되는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「국가공무원법」[4], 「지방공무원법」[5]개정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(행정안전위원회)에 계류 중에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307

4) 정부제출, 상임위 회부(2024.7.15) 의안번호 2201710, 미상정(2024.11.4.현재)
5) 정부제출, 상임위 회부(2024.7.15) 의안번호 2201709, 미상정(2024.11.4.현재)